

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 : 2019년 01월 11일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)

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주요변경내용:

- 법령 반영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EMEA 증권 모두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50 조 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	법령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(기재 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항 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. (기재 생략)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(추가) 부칙 (2019.01.00) 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
- 법령 반영 (운용 및 투자 제한, 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1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	<p>②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</u>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,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</u>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1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	<p>②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삭제)</p> <p>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,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삭제)</p>
제25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기재 수정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

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다. (...)</p> <p>라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	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(아래 예시 참조)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<u>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u></p> <p><u>i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u></p> <p>다. (...)</p> <p>(삭제)</p>
제3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법령 반영	<p>①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①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별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제37조	기재 수정	<p>① 6. 마. 위 본문 (ii)와 관련하여,</p>	<p>(삭제)</p>

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운용 및 투자 제한)		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	
제50조 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	법령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(기재 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항 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. (기재 생략)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(추가) 부칙 (2019.01.00) 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